## KOSHA GUIDE

C - 08 - 2015

- (라) "바닥재"라 함은 수평재와 보재 위에 놓여진 바닥판을 형성하는 부재를 말한다.
- (마) "걸침고리"이라 함은 수평재 또는 보재를 지지물에 고정시킬 수 있게 만들 어진 갈고리형 철물을 말한다.
- (바) "선반지주"라 함은 외줄비계에 설치할 작업발판을 지지하기 위한 삼각틀을 말한다.
- (사) "발끝막이판"이라 함은 이탈된 부품이나 작업 중인 공구 등이 발끝에 차여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바닥면 주변을 따라 수직으로 둘러쳐진 판을 말한다.
- (아) "작업대"란 비계용 강관에 설치할 수 있는 걸침고리가 용접 또는 리벳 등에 의하여 발판에 일체화되어 제작된 작업발판을 말한다.
- (자) "통로용 작업발판"이란 작업대와 달리 걸침고리가 없는 작업발판을 말한다.
- (차) "작업계단"이란 지지대, 계단 발판 및 걸침고리로 구성된 계단형 작업발판을 말한다.
- (2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안전보건규칙 및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## 4. 작업발판의 구조 및 설치기준

## 4.1 목재 작업발판

작업장의 작업발판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-54호(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)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나, 부득이 목재 작업발판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.